

의안번호	143
------	-----

제출년월일: '99.12.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99공유재산관리(4차변경)계획안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9년 공유재산관리(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①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 2. 주요골자

'99년도 공유재산관리(4차 변경)계획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화체육공원부지 2필지 2,482㎡, 봉평궁도장 부지 2필지 9,113㎡등 관리계획에 미 반영 되었던 토지매입 2건 11,595㎡를 반영하고자 하며,

대화체육공원 편입토지중 소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는 대화리 407-2번지 1,160㎡를 취득하고 하안미리 1603-7번지의 1필지 2,320㎡를 처분하는 교환 1건 입니다.

### 3. 관계법규 및 지침(발췌)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 총괄표 ( 7 - 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합계			당초			제4차 변경 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10	79,664	249,550	7	66,909	225,700	3	12,755	23,850
		건물	2	709	810,000	2	709	810,000			
		기타									
	1) 매입	토지	9	78,504	242,938	7	66,909	225,700	2	11,595	17,238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1	1,160	6,612				1	1,160	6,612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2	709	810,000	2	709	810,000			
		기타									
처분	합계	토지	12	3,665	79,650	11	1,345	71,786	1	2,320	7,864
		건물	2	138	1,460	2	138	1,460			
		기타									
	1) 매각	토지	11	1,345	71,786	11	1,345	71,786			
		건물	2	138	1,460	2	138	1,460			
		기타									
	2) 교환	토지	1	2,320	7,864				1	2,320	7,864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99년도 취득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sup>2</sup>,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소유자
	구조	소 재 지	수 량				
합계		4 필지	11,595	17,238			
1 -1	임	대화리 산162-2	670	220	하반기	대화체육공원 부지	전대식
-2	전	대화리 408	1,812	10,328	.	.	김창섭
2 -1	임	창동리 산6	6,843	5,030	하반기	동평 궁도장 부지	이종훈
-2	임	창동리 산16-2	2,270	1,660	.	.	이건표

# 99년도 교환재산 목록(7-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sup>2</sup>,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환수량	추정가액	교환사유	대상자
	구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수량				
1	취득	전	대화리 407-2	1,160	1,160	6,612	대화체육 공원부지 소유자가 교환요구	신광선
		합계	2 필지		2,320	7,864		
	처분	전	하안미 1603-7	43,269	1,260	4,271		
		전	하안미 1603-8		1,060	3,593		

# 관 계 법 규 ( 발 취 )

## 지 방 재 정 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①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②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 (시군의 경우 1억원 이상) ---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 --- 취득의 경우(1,000㎡ 이상) --- 처분의 경우(1,000㎡ 이상)

##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99년도에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않은 유휴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5. 재산의 처분기준

다. 재산의 교환기준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이외의 토지 건물 기타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수 있다.

(2) 전항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토지와 토지간, 건물과 건물간)의 재산이어야 하고,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3/4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하며, 교환하는 토지의 면적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한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을 제한할수 있다.

(가)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나) 장래에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